

##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탁 중 연\*\*

### 국 | 문 | 조 | 록

절도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구제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들은 왜 범죄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자신의 동네범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사기범죄의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간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의 이론적 논거로서 자주 사용된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범죄피해신고, 범죄피해조사, 법의 행동이론, 사기, 절도.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절도와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현실적인 대응책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특정한 후 최소 수백만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치르고 수년간의 재판과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 이 연구는 2010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조성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범죄학박사

피해신고를 하기만 하면 누구의 조력 없이도 거의 즉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절도와 사기와 같은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112전화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재산범죄 피해자 모두가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sup>2)</sup>. 문제는 이런 신고포기 결정은 피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민사적 배상의 길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마저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범죄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반복 피해를 당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지역사회의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신고를 통해 해당 범죄자를 검거했다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추가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신고포기 결정으로 인해 범인의 특징은 물론 범죄피해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한 명의 절도범이 한 지역을 거의 휘젓고 다니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절도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범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서구의 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연구해 온 결과, 범죄피해규모의 경미성, 피해자와 가해자와 인적관계, 또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umer and Lauriste, 2010). 다만, 기존의 연구들도 대부분 가정폭력 (Bachman et al., 1995; Berk et al., 1984; Felson et al., 2002), 성폭력 (Avakame et al., 1999; Baumer et al., 2003), 일반폭력과 상해 (탁종연·노성훈, 2008; Avakame et al., 1999), 강도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탁종연·노

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 한해 공식처리된 절도사건 223,264건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가 151,510건, 고소한 경우가 3,246건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려 범죄가 시작된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했고, 사기사건의 경우 총 205,140건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가 17,954건, 고소한 경우가 126,886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2009:160).

2)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피해자의 17%, 사기피해자의 8%만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외, 2009).

성훈, 2008) 같은 대인범죄에 집중되어 왔고, 절도나 사기같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 (예: Copes et al., 2001;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신고결정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주제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 범죄피해조사’ (김은경 등, 2009)에서 기존부터 조사해오던 절도 이외에도 사기범죄를 중점 조사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 사기피해자의 행동을 연구할 수 기회가 열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해 재산범죄, 특히 사기와 절도의 범죄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범죄를 신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 포기하는지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자들의 범죄 신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국내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 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는 2009년에 전면 개편된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연구와 관련된 자료의 장단점 등을 같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절도와 사기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결과가 주는 의미와 한국 형사정의시스템과 범죄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 II. 선행연구

### 1. 이론적 배경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는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의 “법의 행동” (The Behavior of Law)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 법은 피해자의 범죄신고, 경찰의 체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판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통제기제로 정의되는데, 핵심적 주장은 법이 양적으로 변화하는 변수이며, 그 사용량이 가해자나 피해자 등 법사용 당사자들의 사회생활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이다. 블랙이 제시한 다섯 가지 사회생활 환경요인은 당사자의 계층,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 등이다.

이론에서 언급한 첫 번째 사회적 요인은 계층 (stratification)이다. 계층은 수직적 인 사회생활의 측면, 즉 금전, 토지나 물에 대한 권리와 같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일컫는 것이다 (Black, 1976:11). 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당사자의 계층에 따라 법의 사용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위계층 사람들은 하위계층사람들보다 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거리는 (morphology) 수평적 사회관계를 말한다 (Black, 1976:37). 법의 사용량과 범죄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는 컵을 엮어 놓은 형태의 관계 또는 2차방정식 곡선의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친구나 지인 등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상호 접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법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Black, 1976:41).

문화는 (culture) 관습, 도덕, 신화, 교육, 종교와 같은 사회생활의 상징적 측면을 의미한다 (Black, 1976: 61).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는 주로 교육수준, 언어구사력, 문화이해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화적 차이도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들처럼 법의 사용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교육 등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법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화는 (organization) 사회생활의 협력적 측면을 뜻한다 (Black, 1976: 85). 개인보다는 회사나 사단법인 같은 집단이 조직화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조직화 수준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절도나 횡령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는 (social control)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제를 말하는데, 법의 사용은 다른 사회통제의 사용과 반비례한다 (Black, 1976: 105). 즉, 조직, 직업, 부족, 이웃사회, 가족 내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가 많이 사용될수록 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법은 더 적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블랙의 이론을 정리하면,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폭 넓은 문화를 향유하며, 강한 사회적 조직에 속해있고, 낮은 사회적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자신과 인적 관계가 먼 사람과의 분쟁에서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행동이론은 이론의 체계성과 논리성으로 인해 범죄학자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비판도 받고 있다. 주로 지적되는 이론의 약점은 범죄 피해 자체의 심각성이 이론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Hembroff, 1987). 형사법이론으로나 일반상식에 의할 때, 범죄의 심각성은 재정적 손실이나 신체적 손상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의 집행과 처벌도 이에 따라 주로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Sellin and Wolfgang, 1964), 법의 행동이론에는 범행 자체의 심대성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실 블랙은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다섯 가지 명제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사회의 하류층이 상류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상류층이 하류층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Black, 1976: 15). 물론 이런 주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일부 설명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신고, 수사, 기소, 재판 등 각종 법의 사용이 다섯 가지 비법적 사회 환경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범죄의 종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도 법의 행동이론의 틀에서는 제대로 포섭되지 않아 실증연구의 준거이론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최근의 피해자 신고행동관련 연구에서 법의 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어진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 Baumer and Lauristen, 2010; Felson et al., 1999; Felson et al., 200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법의 행동이론에 얼마이지 않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하였다.

## 2. 실증연구 검토

범죄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범죄피해신고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실증적 연구가 이뤄져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신고의 결정요인은 피해자가 경험한 범죄피해의 종류이다. 예를 들어, 강간 등 성범죄의 신고율은 강도, 절도, 상해 등의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aumer and Lauristen, 2010),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다 (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06). 이렇게 특정 범죄의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그 범죄피해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신고 후에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겪을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죄피해를 신고할 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들이 고려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피해의 심각성으로 볼 수 있다. 피해의 심각성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서구의 연구를 보면 경제적 손실이 큰 경우에 작은 경우보다 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절도보다는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신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and and Catalano, 2007; Slogan, 198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를 살펴보면도 자동차절도의 신고율이 자동차부품 절도나 일반절도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지선 외, 2006). 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 또는 사용했거나,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신체적 위협수준이 심각한 경우 신고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탁종연·노성훈, 2008; Laub, 1997; Skogan, 1984). 요약하면 재산범죄이건 폭력범죄이건 중대한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이다.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이 발표한 ‘법의 행동’ (The Behavior of Law)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vakame et al., 1999; Copes et al., 2001). 블랙에 사회적 거리론 (morphology)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보다는 관계가 먼 사람, 즉 가족보다는 친구, 친구보다는 지인, 지인보다는 완전한 타인에 의

한 범죄사건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인적관계의 영향은 범죄의 종류, 측정방법, 다른 변수의 통제수준 등에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Baumer and Lauristen, 2000).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신고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나타났지만 (예: Hindelang and Gottfredson, 1979; Copes et al., 2001), 근래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관계가 신고확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예: Felson et al., 1999).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피해자들의 신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derson, 2000; Baumer and Lauristen, 2010; Schnebly, 2008).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소수인종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린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예: Anderson, 2000). 사실 이런 시민과 경찰 간의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소위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인 경찰과 시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lling and Moore, 1988).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자신의 동네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신고한 이유 중 범죄재발 방지를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변수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의 이론, 특히 계층론 (stratification) 등을 참고하면 백인, 남성, 부유층에서 경관요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연구에서는 반대의 증거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또는 소수인종일 때 신고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Avakame et al., 1999;

Hart and Rennison, 2003; 탁종연·노성훈, 2008).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들에 대한 상당한 실증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sup>3)</sup>을 검증하기 위한 시계열적 연구가 부족하다 (예외: Baumer and Lauristen, 2010; Baumer et al., 2003). 하지만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연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기존 연구의 다른 문제점은 조사 대상을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범죄에 두고 절도와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국내의 학계에서는 죄종을 막론하고 이 주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sup>4)</sup>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에서의 피해자들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연구에서 신고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된 요인들, 즉, 범죄의 심각성, 가해자와의 관계,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주된 독립변수로 보고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 요인들이 재산범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여성들의 신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김지선 외, 2006), 이는 사회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개선된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범죄 신고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발전도 범죄피해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Baumer and Lauristen, 200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수단의 발전이다. 과거 전화가 대중화되지 않고 112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웠지만, 1980년 이후 집전화의 보급과 1990년대 이후 핸드폰의 확산 덕분에 신고가 매우 용이해졌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계속 범죄피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는 그러한 감소추세가 감지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핸드폰의 보급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4) 행정원의 범죄피해조사 결과보고서 (예: 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06)나 문장일의 연구(2004)에서 피해액 및 피해자의 인적특성과 신고율 사이의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을 실시한 것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행정원)에서 시행한 제8차 범죄피해조사의 원 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에 행정원에서 통계청에 의뢰하여 전국의 14세 이상의 남녀 10,671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경험여부, 피해상황 및 결과 등을 질문한 것이다 (김은경 외, 2009). 이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유일한 설문조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행정원에서는 이미 7차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표본의 크기가 불과 2천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확률표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사대상 범죄가 한정적이었다는 점 등 때문에 이 연구와 같은 실증연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원의 제8차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이상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표본크기가 1만 명 이상으로 5배나 커졌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재산범죄로는 절도만 조사하다 사기범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행정원에서는 제8차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두 가지 SPSS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공개하고 있다. 하나는 조사에 응답자 (10,671명)를 기준으로 작성한 파일이며, 다른 하나는 응답자들이 경험한 사건 (10,835사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응답자기준 파일에도 사건기준 파일과 같이 피해경험과 그 결과 등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들어있으나, 다만 응답자가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때는 그 수만큼의 사건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건기준 파일의 사례수가 좀 더 많을 뿐이다. 이 연구는 각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한 각 상황에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기준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은 절도와 사기사건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사건기준 파일에서 절도와 사기범죄피해사례만을 따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이 범죄피해조사에서 보고한 절도피해사건은 459건이었고, 사기범죄피해를 사건은 247건이었다. 행정원에서는 절도피해를 가구범죄인 주거침입절도 (124건)와 개인범죄인 절도(335건)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도 작고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절도피해를 묶어서 연구하였다. 다만, 별도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결과는 거의 같았음을 밝힌다.

## 2. 변수

### ○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피해신고 여부이다. 이 변수는 재산범죄 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와 (1로 코딩) 신고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로 나뉜 이분형 변수이다. 두 경우 공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절도의 경우 총459건 중 신고사례가 80건 (17.4%)이었고, 사기의 경우, 총247건 중 신고사례가 20건(8.1%)에 불과했다 (표1 참조).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 변수이름     | 변수설명                                                                     | 절도사건<br>(n=459) |     |     | 사기사건<br>(n=247) |     |     |
|----------|--------------------------------------------------------------------------|-----------------|-----|-----|-----------------|-----|-----|
|          |                                                                          | 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          |                                                                          |                 |     |     |                 |     |     |
| 〈종속변수〉   |                                                                          |                 |     |     |                 |     |     |
| 신고함      | 피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함                                                            | .17             | 0   | 1   | .08             | 0   | 1   |
|          |                                                                          |                 |     |     |                 |     |     |
| 〈독립변수〉   |                                                                          |                 |     |     |                 |     |     |
| 피해액      | 범죄피해액수 (100만원)                                                           | 0.53            | 0   | 15  | 3.54            | 0   | 50  |
| 무기위험물건소지 |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물건 소지                                                         | .03             | 0   | 1   | -               | -   | -   |
| 잘 아는 사람  | 가해자가 가족친척, 친구, 애인, 학교선<br>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선생님), 거래<br>관계자,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 .02             | 0   | 1   | .23             | 0   | 1   |
| 경찰검거신뢰   |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br>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 라<br>는 진술에 동의              | .14             | 0   | 1   | .15             | 0   | 1   |
| 동네범죄발생가능 |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 .26             | 0   | 1   | .40             | 0   | 1   |

| 변수이름  | 변수설명               | 절도사건<br>(n=459) |    |    | 사기사건<br>(n=247) |    |    |
|-------|--------------------|-----------------|----|----|-----------------|----|----|
|       | 많은 것 같다.” 는 진술에 동의 |                 |    |    |                 |    |    |
|       |                    |                 |    |    |                 |    |    |
| 통제변수  |                    |                 |    |    |                 |    |    |
| 나이    | 피해자의 만 나이          | 40.64           | 14 | 91 | 40.63           | 14 | 77 |
| 여성    | 피해자가 여성            | 0.43            | 0  | 1  | 0.47            | 0  | 1  |
| 대졸    | 피해자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    | .31             | 0  | 1  | .45             | 0  | 1  |
| 월평균소득 | 피해자 가구 월평균 소득*     | 3.99            | 1  | 7  | 4.11            | 1  | 7  |
|       |                    |                 |    |    |                 |    |    |

\* 월평균소득: 소득 없음(1), 100만원 미만(2), 101-200만원 미만(3), 201-300만원 미만(4), 301-50만원 미만(5), 501-1,000만원 미만(6), 1,000만원 이상(7)

### ○ 독립변수

이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는 피해의 심각성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다시 피해액과 무기위험물건소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개념상 물리적 피해는 배제되므로, 피해의 심각성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범죄피해조사에는 피해액을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변수로 사용하였다. ‘피해액’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절도 피해자들은 평균 53만원의 피해를, 사기 피해자들은 평균 35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무기위험물건소지’ 변수는 가해자가 칼, 드라이버, 병 등 무기나 위험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면 높게 (무기위험물건소지=1), 그렇지 않았으면 낮게 코딩 (위험물건소지=0)한 이분형 변수이다. 이는 피해액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그 범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도 등과 달리 순수 재산범죄의 경우,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위험물건소지의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절도피해사건의 경우에 2.8%의 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잘 아는 사람’ 변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가해자가 가족·친척, 친구, 애인,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또는 선생님),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 경우는 높게 (잘 아는 사람=1), 단지 안면만 있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낮게(잘 아는 사람=0) 코딩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친척으로 3가지로 나누어 물어보고, 아는 사람인 경우 이를 다시 친구, 애인,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또는 선생님),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안면만 있는 사람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인적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절도의 경우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인 경우는 1.5%에 불과하였고, 사기의 경우는 23.1% 정도였다.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적관계는 단지 얼굴만 아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적관계의 마지막 범주인 안면만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합친 것이다.

‘경찰검거능력신뢰’ 변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응답자가 이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높게 (경찰검거능력신뢰=1)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게 (경찰검거능력신뢰=0) 코딩하였다. 절도의 경우 14.1%, 사기의 경우 15.0%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의 경찰검거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변수들<sup>5)</sup>도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사용하지 않았다.

‘동네범죄발생가능성’ 변수는 일반적인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설문지의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

5) 이들 변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 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이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요인분석으로 묶어서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거의 같았다.

우를 높게 (동네범죄발생가능성=1) 코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게 (동네범죄 발생가능성=0) 코딩하였다. 절도의 경우 40%, 사기의 경우 26%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동네범죄 발생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 ○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범죄피해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독립변수들과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들을 사용하였다<sup>6)</sup>. ‘나이’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40.6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한 변수로서, 응답자가 여성이면 높게(여성=1), 남성이면 낮게 (여성=0) 코딩하였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43.1%, 사기사건의 경우 47.0%가 여성으로 밝혀졌다.

‘대졸’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측정한 이분형변수로서, 응답자가 대졸이상이면 높게(대졸=1), 그보다 낮은 학력을 소지했으면 낮게 (대졸=0) 코딩하였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31.2%가 사기사건의 경우 45.3%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측정한 변수이다. 이 변수는 범죄피해 조사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장 낮게 코딩하고 (소득=1), 100만원미만 (소득=2), 101-200만원 미만 (소득=3), 201-300만원미만 (소득=4), 301-50만원미만 (소득=5), 501-1,000만원미만 (소득=6), 그 이상 (소득=7)으로 코딩하였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블랙 (Black)의 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계층 (stratification)적으로 또는 문화(culture)적 측면에서 법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 (dichotomous variable)이므로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기존 연구의 관행에 따라 0.05(two-tailed)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였다.

6) 범죄피해횟수나 집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도 포함했으나 유의미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IV. 연구결과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의 경우 신고함과 피해액 (.370), 다음으로 나이와 집피해 (.323)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사기의 경우에는 나이와 대졸변수(-.297)의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회귀분석에 영향을 줄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략).

〈표 3〉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                     | 절도사건      |        |            | 사기사건     |        |            |
|---------------------|-----------|--------|------------|----------|--------|------------|
|                     | B         | Wald   | Odds Ratio | B        | Wald   | Odds Ratio |
| 독립변수)               |           |        |            |          |        |            |
| 피해액(100만원)          | 1,177 *** | 26,935 | 3,243      | ,087 *** | 13,151 | 1,091      |
| 무기위험소지              | 1,437 *   | 4,425  | 4,207      | -        | -      | -          |
| 잘 아는 사람             | -8,192    | ,199   | ,000       | -1,636 * | 3,874  | ,195       |
| 경찰검거능력 신뢰           | -,127     | ,089   | ,881       | -18,541  | ,000   | ,000       |
| 동네범죄가능성             | 0,903 **  | 8,14   | 2,468      | ,475     | ,662   | 1,608      |
|                     |           |        |            |          |        |            |
| 피해자 특성              |           |        |            |          |        |            |
| 나이                  | ,030 **   | 7,442  | 1,031      | -,028    | 1,624  | ,972       |
| 여성                  | ,025      | ,006   | 1,025      | -1,279 * | 4,402  | ,278       |
| 대졸                  | ,517      | 1,800  | 1,677      | ,319     | ,299   | 1,376      |
| 월평균소득               | -,149     | 1,346  | ,862       | -,446 *  | 4,029  | ,640       |
|                     |           |        |            |          |        |            |
| 상수                  | -3,700    | 12,950 | ,025       | 2,069    | 1,762  | 7,917      |
| -2 log likelihood   | 275,62    |        |            | 102,18   |        |            |
| Nagelkerke R Square | 0,342     |        |            | 0,303    |        |            |
| 표본크기                | 399       |        |            | 227      |        |            |

\*,01<p<05, \*\*p<.01, \*\*\*p<.001

표3은 범죄피해신고여부 즉 ‘신고함’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의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이었다. 절도사건의 경우 다른 조건을 통제 한 후에도 피해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 마다 신고할 가능성이 3.24배,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1.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p<.001$ ). 피해의 심각성의 또 다른 지표인 무기위험소지 역시 신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절도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4.2배나 더 많이 신고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들은 절도와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부에 따라 주로 신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독립변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변수, 즉 잘 아는 사람 변수는 오직 사기 사건에서만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도 안 되는 0.19배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p<.05$ ). 즉, 피해액 등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해도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변수는 절도사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경찰검거능력 신뢰변수는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피해자가 신고 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줄 수 있을 거란 평소의 믿음은 다른 조건이 같다고 볼 때 실제 절도와 사기사건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독립변수인 동네범죄가능성 변수는 절도에서만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도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짐에 따라 신고확률은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p<.001$ ), 사기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은 1/4수준으로 떨어지고, 월평균소득이 한 단계 증가하면 신고확률이 1/3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통제변수, 학력수준(대졸)은 특성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피해자가 응답한 그 피해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 미신고이유                           | 절도사건 %            | 사기사건 %            |
|---------------------------------|-------------------|-------------------|
|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 55.4              | 51.5              |
| 증거가 없었기 때문                      | 22.4              | 3.5               |
|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 9.2               | 3.1               |
|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8.7               | 2.6               |
|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       | 2.6               | 19.8              |
|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                  | 0.3               | 15.4              |
|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0.5               | 0.4               |
|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 -                 | 0.4               |
| 기타                              | 0.8               | 3.1               |
| 합계                              | 100.0%<br>(n=379) | 100.0%<br>(n=227)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조사에서 직접 그 피해사건의 미신고 이유로 응답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표4에서 보듯이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모두 절반을 넘었다. 또한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5.4%에 달해 가해자와의 관계가 신고하지 않게 한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절도사건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관련 신뢰도가 미신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까닭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 (22.4%),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9.2%), 그리고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7%) 등을 들었다는 점은 다른 말로 하면 40% 정도의 사람들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 신고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피해자가 응답한 그 피해사건을 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

| 신고한 이유     | 절도 %          | 사기 %          |
|------------|---------------|---------------|
| 범인검거처벌     | 45,0          | 40,0          |
| 손실회복       | 38,8          | 45,0          |
| 동일유사사건재발방지 | 8,8           | 15,0          |
| 경찰예방활동개선   | 2,5           | -             |
| 범죄이니까      | 3,8           | -             |
| 기타         | 1,3           | -             |
| 합계         | 100<br>(n=80) | 100<br>(n=20) |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당해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결정의 가장 큰 이유도 질문하고 있는데, 그 응답내용도 상기 내용과 부합한다. 즉, 표 5에서 보듯이 그 사건을 실제로 신고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범인검거처벌이라고 답한 경우가 절도 45%, 사기 40%였고, 다음으로 손실회복이라고 답한 경우가 절도의 경우 38.8%, 사기의 경우 45.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범인검거처벌하거나 손실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비록 평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당해사건에서는 경찰의 검거능력을 고려하여 신고 또는 미신고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 1.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자신의 동네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행동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피해액이 커지거나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와 같이 범죄피해가 심각할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나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해자를 잘 아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신고하기를 꺼려하지만 이는 인지상정일지 모르며 합리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범죄학자들과 형사사법체제의 실무가들은 공식통계를 해석할 때 피해액이 적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체계적으로 축소되어 보고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남자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신고확률이 높아진다는 발견은 법의 행동이론의 예측내용과 상당히 부합하지만,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신고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나, 이론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범죄피해 자체의 심각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 이론의 설명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가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남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에 다룬 범죄가 재산 범죄로 한정된 탓에 폭력, 성폭력, 강도 등 다른 범죄에서는 각 변수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 인적관계의 효과가 절도범죄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사기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보면, 조사 대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는 달리 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절도와 같이 타인간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연관된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값을 세분화하여 사용하지 못해 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관계 변수는 좀 더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좀 더 인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고확률이 높아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탁종연·노성훈, 2009).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료 자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활용한 자료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표본이지만, 현재 한국의 범죄피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탓에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례수가 크지 않았다. 가장 흔한 범죄피해인 절도의 경우도 불과 400여 사례에 불과하였고, 성범죄나 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는 100사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별로 많은 변수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표본의 크기를 늘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증연구를 위해 표본의 크기를 늘리거나 조사 횟수를 좀 더 늘려 복수의 조사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장일, 2004.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비교형사법연구 6:315-345.
- 탁종연 · 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41-70.
- Anderson, E. (2000). 「The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Chicago: W. W. Norton & Company.
- Avakame, E. F., Fyfe, J. J., & McCoy, C. (1999). “Did you call the police? What did they do?: An empirical assessment of Black’s theory of mobilization of law,” 「Justice Quarterly」 16:765-792.
- Bachman, R. (1998). “The factors related to rape reporting behavior and arrest: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8-29.
- Bachman, R., & Coker, A. L. (1995). “Police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interactive effects of victim injury, offender's history of violence, and race,” 「Violence and Victims」 10, 91-106.
- Baumer, Eric & Lauristen, Janet.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 1973-2005: a multivariate analysis of long-term trends in the national crime survey (NCS) and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Criminology」 48:131-185.
- Berk, R. A., Berk, S. F., Newton, P. J., & Loseke, D. R. (1984). “Polices on call: Summoning the police to the scene of spousal violence,” 「Law and Society Review」 19:479-498.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 New York: Academic Press.
- Copes, H, Kerley, K.R., Mason, K.A., & Wyk, J. V. (2001). “Reporting behavior of fraud victims and Black's theory of law:an empirical assessment.” 「Justice Quarterly」 19:343-363.
- Felson, R. B., Messner, S. F., & Hoskin, A. (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ing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931-947.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 617-647.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 (1979). “A study of the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3-18.
- Hembroff, L. A. (1987). “The seriousness of acts and social contexts: a test for Black's theory of the behavior of law.”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322-347.
- Hickman, L. J., & Simpson, S. S. (2003). “Fair treatment or preferred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and Society Review」 37: 607-634.
- Hindelang, M. J., & Gottfredson, M. R. (1976). “The victim's decision not to invoke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W. E McDonald (Ed.), 「Criminal justice and the victim」 Beverly Hills, CA: Sage.
- Kelling, G. L., and Moore, M. (1988). “From political to reform to community: The evolving strategy of police”. In 「Community Policing: Rhetoric or Reality」 , eds. Jack R. Greene and Stephen D. Mastrofski. New York: Praeger.
- Kidd, R. F. & Chayet, E. F. (1984). “Why do victims fail to report? The psycholog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 39-50.
- Laub, J. H. (1997). “Pattern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Victims of Crime」 , eds. Robert C. Davis, Arthur J. Lurigio, and Wesley

G. Skogan. Thousand Oaks, CA: Sage.

Schnebly, Stephen M. (2008). “The influen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on crime-reporting behavior“. 「Justice Quarterly」 25:223-51.

Sellin, T and Wolfgang, M. (1964). 「The measurement of delinquency」 New York: Wiley.

Skogan, Wesley G.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113-37.

## Reporting theft and fraud victimization in Korea

Tak, Jong-Yeon

Most victims of property crime do not report their victimization although it is probably the easiest way to receive reimbursement in Korea. To date, few studies have examined why they decided not to notify the case in Korea. Using 459 theft cases and 247 fraud cases recorded in the recently renovated Korean Crime Victim Survey, this study performed a logistic regression in the context of Donald Black's theory of Behavior of Law. The results indicate that seriousness of cr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the perceived likelihood of victimization in victim's neighborhood, and victim's age and sex affect victim's reporting behavior and Black's propositions are only partially supported.

❖ Key words : police notification, behavior of law, fraud, theft, crime victimization survey

